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3-36호

「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제안이유

- 「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」 일부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예외 조건 등 일부 내용 통일.
- 출장 적용범위 명확화, 허가절차 신설 및 자구정리 등

2. 주요내용

- 규칙의 제명을 “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”으로 띄어쓰기 (제명)
-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명확화(안 제2조)
-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신설 (안 제3조의2)

-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임하도록 개정(안 제4조제1항)
-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 예외 조건 신설(안 제4조제2항)
-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의 위임 조항 신설(안 제7조의2)

3. 일부개정규칙안 : 붙임

4. 규칙안 예고기간 : 2023. 11. 21. ~ 2023. 11. 28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2.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규칙 제 호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”을 “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”를 “소속 공무원이 아닌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타 고흥군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허가절차)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(이하 “출장자”라 한다)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고흥군의회 사무과장(이하 “사무과장”이라 한다)에게 요청해야 한다.

② 사무과장은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.

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비용이 드는”을 “소요되는”으로 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 「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에 따라 구성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겸임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중앙행정기관, 광역자치단체 및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2.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3.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

제5조 중 “고흥군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”을 “실시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허가권의 위임)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</u>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</u> <u>람이 고흥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</u> <u>한다)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</u> <u>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</u> <u>출장하는 경우. 이 경우 국외에</u> <u>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</u> <u>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<u>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</u>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소속 공무원이 아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. <u>기타 고흥군의회 의장의 명에</u> <u>의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의2(허가절차) ① <u>공무국외출</u> <u>장을 하려는 자(이하 “출장자”라</u> <u>한다)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</u> <u>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</u> <u>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</u> <u>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에</u> <u>정 30일 전까지 고흥군의회 사무</u> <u>과장(이하 “사무과장” 이라 한다)</u> <u>에게 요청해야 한다.</u></p>
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, 「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 제4조제7항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공무국외출장에 비용이 드는

② 사무과장은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.

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.
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 「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에 따라 구성된 고흥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 에서 검입한다.

1. ----- 소요되는 ---

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
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(이
하 “공무국외출장자”라 한다)의
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·단
체(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
구는 제외한다) 또는 개인이 부
담하는 공무국외출장

2. 3. (생략)

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
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
하의 위원으로 구성·운영하며,
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
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
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. 다만 출
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
기관·단체(외국의 정부기관 및
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)가 부담
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
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
다.

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·
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
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
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.

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
지 않을 수 있다.

1. 중앙행정기관, 광역자치단체 및
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
하는 경우

2.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
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
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
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
3.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
위해 출장하는 경우

<삭 제>

<삭 제>

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
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
증명서류를 붙여 고흥군의회 공무
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
청하여야 한다.

제5조(소양교육) 공무국외출장자는
출장 전 고흥군의회사무국에서 실
시하는 출장자수칙, 보안서약 등
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
야 한다. 다만, 출장자의 경력, 해
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
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
있다.

<신 설>

제5조(소양교육) -----
----- 실시하는 -----

제7조의2(허가권의 위임) 제3조에
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
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
할 수 있다.

[붙임 2]

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